

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04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0. 11. / /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체육진흥기금 운용 금리 하락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와 체육단체 및 학교운동부에 대한 지원 증가로 안정적인 사업목적 추진을 위한 기금의 확대 조성이 요구되어 개정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가. 체육진흥기금 조성액 상향 조정(안 제2조제1항)

- ◆ (기존) 기금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안산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총 15억원을 매년 3억원씩 출연 한다.
- ◆ (변경) 기금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안산시 일반회계 예산에서 매년 8.5억원 이상 출연(85억)하여 목표기금 100억원을 조성한다.

개정조례안 : 불임

신·구조문대비표 : 불임

관계법령발췌서 : 불임

-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일반회계 예산 3억원씩 5년간 총 15억원 출연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10. 10. 15. ~ 11. 4.(20일간).

기타 참고사항 : 불임

- 현행 조례(전문)

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8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8조에 따라”로 하고, “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”를 삭제한다.

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기금조성) ① 안산시체육진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조성된 기금 외에 추가 기금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8.5억원 이상 출연하여 목표기금 100억원을 조성한다.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연 출연금을 증액하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
제3조제1항 중 “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8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전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회계년도”를 “회계연도”라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”을 “규정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”으로 한다.

제13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”을 “시행에 필요한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체육진흥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체육진흥과장 김형호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체육진흥담당 박은학
	담당자 성명·전화	문훈기 (행정 2147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안산시체육진흥기금(이하 "기금"이라한다)의 조성 및 운용관리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제8조 에 따라 〈삭 제〉
제2조(기금조성) ① 기금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안산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총 15억원을 매년 3억원씩 출연한다. 단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년 출연금을 증액하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 ② (생략) 제3조(기금의 운용, 관리) ① 기금은 「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한다. ② ~ ③ (생략) 1. ~ 3. (생략) ④ (생략)	제2조(기금조성) ① 안산시체육진흥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조성된 기금 외에 추가 기금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8.5억원이상 출연하여 목표기금 100억원을 조성한다.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연 출연금을 증액하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 ② (현행과 같음) 제3조(기금의 운용, 관리) ① 에 따라 ② ~ ③ (현행과 같음)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
제4조(기금의 운용계획) ① (생략)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1. ~ 2. (생략) 3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(생략) ④ 체육회장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일 이내에 전년도의 기금운용에 대한 집행결과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.	제4조(기금의 운용계획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에 따른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그 밖에 ③ (현행과 같음) ④ 회계연도
제11조(관계규정의 준용) ① (생략)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재무회계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	제11조(관계규정의 준용) ① (현행과 같음) ② 규정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13조(시행규칙) 시험에 필요한

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수정안

의안 번호	2047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0. 12. 10.
제 안 자 : 경제사회위원장

1. 수 정 이 유

- 안산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금 조성 규모와 기금 조성 기간을 조정함.

2. 주 요 골 자

- 기금규모 및 기금 조성기간을 수정함(안 제2조).

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

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제2조(기금조성) “2020년까지 매년 8.5억원이상 출연하여 목표기금 100 억원을”을 “2015년까지 매년 5억원을 출연하여 목표기금 40억원을 ”로 한다.

조문대비표